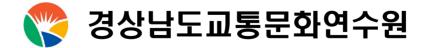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 2023 교육계획서



### 원 훈

- 1. 고객 중심주의
- 1. 감동주는 교육
- 1. 지역사회 봉사

### 回母呈田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운수인 양성

- 교통법규 준수 및 교통질서의 확립
- 직업윤리관 함양 및 친절·서비스 실현
-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솔선
- ○『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시책사업 확산
-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운전자의 역할 증대
- 교육의 효과확산 및 지역사회 봉사

# 2023 교육계획서 목 차

1. 사업목표 등 2. 교육과정 및 인원 등 5 3. 교육과정별 목표 등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Ι.	사업개요	
3. 교육과정별 목표 5  Ⅲ. 사업용운전자 법정교육 6 1. 교육비전 및 목표 6 2. 교육개요 6 3. 교육운영방법 7 4. 교육인원 및 일정 8 5. 과정 및 교육장별 일정 10 6. 세부교육계획 24 7. 교재발간 30 8. 교육증점 추진사항 31 9. 교육관리 32 10. 기타사항 35 11. 행정사항(도) 36 12. 교육 미이수자 행정사항 법적근거 38  Ⅲ. 특별교육 40 1. 특별교육 40 2. 법인택시 사고자 교육 40 3. 공무원 교통자식 함양교육 40 1.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42 1. 어런이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42 1. 어런이 교통안전교육 42 2.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42 3. 교통안전계도 및 홍보 43		1. 사업목표	. 5
Ⅱ. 사업용운전자 법정교육 6 1. 교육비전 및 목표 6 2. 교육개요 6 3. 교육운영방법 7 4. 교육인원 및 일정 8 5. 과정 및 교육장별 일정 10 6. 세부교육계획 24 7. 교재발간 30 8. 교육중점 추진사항 31 9. 교육관리 32 10. 기타사항 35 11. 행정사항(도) 36 12. 교육 미이수자 행정사항 법적근거 38 Ⅲ. 특별교육 40 1. 특별교육 40 2. 법인택시 사고자 교육 40 3. 공무원 교통지식 함양교육 41 Ⅳ.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42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42 2.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42 3. 교통안전계도 및 홍보 43		2. 교육과정 및 인원	. 5
1. 교육비전 및 목표 62. 교육개요 63. 교육운영방법 74. 교육인원 및 일정 85. 과정 및 교육장별 일정 106. 세부교육계획 247. 교재발간 308. 교육중점 추진사항 319. 교육관리 3210. 기타사항 3511. 행정사항(도) 3612. 교육 미이수자 행정사항 법적근거 3811. 특별교육 401. 특별교육 402. 법인택시 사고자 교육 403. 공무원 교통지식 함양교육 403. 공무원 교통지식 함양교육 41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42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422.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423. 교통안전계도 및 홍보 43		3. 교육과정별 목표	5
1. 교육비전 및 목표 62. 교육개요 63. 교육운영방법 74. 교육인원 및 일정 85. 과정 및 교육장별 일정 106. 세부교육계획 247. 교재발간 308. 교육중점 추진사항 319. 교육관리 3210. 기타사항 3511. 행정사항(도) 3612. 교육 미이수자 행정사항 법적근거 3811. 특별교육 401. 특별교육 402. 법인택시 사고자 교육 403. 공무원 교통지식 함양교육 403. 공무원 교통지식 함양교육 41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42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422.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423. 교통안전계도 및 홍보 43			
2. 교육개요       6         3. 교육운영방법       7         4. 교육인원 및 일정       8         5. 과정 및 교육장별 일정       10         6. 세부교육계획       24         7. 교재발간       30         8. 교육중점 추진사항       31         9. 교육관리       32         10. 기타사항       35         11. 행정사항(도)       36         12. 교육 미이수자 행정사항 법적근거       38         Ⅲ. 특별교육       40         1. 특별교육       40         2. 법인택시 사고자 교육       40         3. 공무원 교통지식 함양교육       41         Ⅳ.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42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42         2.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42         3. 교통안전계도 및 홍보       43	Ι.	사업용운전자 법정교육	6
3. 교육운영방법 7 4. 교육인원 및 일정 8 5. 과정 및 교육장별 일정 10 6. 세부교육계획 24 7. 교재발간 30 8. 교육중점 추진사항 31 9. 교육관리 32 10. 기타사항 35 11. 행정사항(도) 36 12. 교육 미이수자 행정사항 법적근거 38  Ⅲ. 특별교육 40 1. 특별교육 40 2. 법인택시 사고자 교육 40 3. 공무원 교통지식 함양교육 40 3. 공무원 교통지식 함양교육 41  Ⅳ.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42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42 2.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42 3. 교통안전계도 및 홍보 43			
4. 교육인원 및 일정 85. 과정 및 교육장별 일정 106. 세부교육계획 247. 교재발간 308. 교육중점 추진사항 319. 교육관리 3210. 기타사항 3511. 행정사항(도) 3612. 교육 미이수자 행정사항 법적근거 3811. 특별교육 401. 특별교육 402. 법인택시 사고자 교육 403. 공무원 교통지식 함양교육 403. 공무원 교통지식 함양교육 4111V.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422.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423.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433. 교통안전계도 및 홍보 43		2. 교육개요	6
5. 과정 및 교육장별 일정 10 24 7. 교재발간 30 8. 교육중점 추진사항 31 9. 교육관리 32 10. 기타사항 35 11. 행정사항(도) 36 12. 교육 미이수자 행정사항 법적근거 38 12. 교육 미이수자 행정사항 법적근거 38 12. 교육 미이수자 행정사항 법적근거 40 1.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 교육 40 2. 법인택시 사고자 교육 40 3. 공무원 교통지식 함양교육 41 1V.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42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42 2.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42 3. 교통안전계도 및 홍보 43		3. 교육운영방법	. 7
6. 세부교육계획 24 7. 교재발간 30 8. 교육중점 추진사항 31 9. 교육관리 32 10. 기타사항 35 11. 행정사항(도) 36 12. 교육 미이수자 행정사항 법적근거 38  Ⅲ. 특별교육 40 1.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 교육 40 2. 법인택시 사고자 교육 40 3. 공무원 교통지식 함양교육 41  Ⅳ.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42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42 2.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42 3. 교통안전계도 및 홍보 43		4. 교육인원 및 일정	8
6. 세부교육계획 24 7. 교재발간 30 8. 교육중점 추진사항 31 9. 교육관리 32 10. 기타사항 35 11. 행정사항(도) 36 12. 교육 미이수자 행정사항 법적근거 38  Ⅲ. 특별교육 40 1.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 교육 40 2. 법인택시 사고자 교육 40 3. 공무원 교통지식 함양교육 41  Ⅳ.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42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42 2.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42 3. 교통안전계도 및 홍보 43		5. 과정 및 교육장별 일정	10
8. 교육중점 추진사항 31 9. 교육관리 32 10. 기타사항 35 11. 행정사항(도) 36 12. 교육 미이수자 행정사항 법적근거 38 Ⅲ. 특별교육 40 1.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 교육 40 2. 법인택시 사고자 교육 40 3. 공무원 교통지식 함양교육 41 Ⅳ.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42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42 2.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42 3. 교통안전계도 및 홍보 43			24
8. 교육중점 추진사항 31 9. 교육관리 32 10. 기타사항 35 11. 행정사항(도) 36 12. 교육 미이수자 행정사항 법적근거 38 Ⅲ. 특별교육 40 1.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 교육 40 2. 법인택시 사고자 교육 40 3. 공무원 교통지식 함양교육 41 Ⅳ.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42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42 2.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42 3. 교통안전계도 및 홍보 43		7. 교재발간	30
9. 교육관리 32 10. 기타사항 35 11. 행정사항(도) 36 12. 교육 미이수자 행정사항 법적근거 38 Ⅲ. 특별교육 40 1.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 교육 40 2. 법인택시 사고자 교육 40 3. 공무원 교통지식 함양교육 41 Ⅳ.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42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42 2.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42 3. 교통안전계도 및 홍보 43			31
11. 행정사항(도) 36 12. 교육 미이수자 행정사항 법적근거 38 Ⅲ. 특별교육 40 1.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 교육 40 2. 법인택시 사고자 교육 40 3. 공무원 교통지식 함양교육 41 Ⅳ.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42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42 2.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42 3. 교통안전계도 및 홍보 43			32
11. 행정사항(도) 36 12. 교육 미이수자 행정사항 법적근거 38 Ⅲ. 특별교육 40 1.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 교육 40 2. 법인택시 사고자 교육 40 3. 공무원 교통지식 함양교육 41 Ⅳ.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42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42 2.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42 3. 교통안전계도 및 홍보 43		10. 기타사항	35
Ⅲ. 특별교육 40 1.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 교육 40 2. 법인택시 사고자 교육 40 3. 공무원 교통지식 함양교육 41 Ⅳ.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42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42 2.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42 3. 교통안전계도 및 홍보 43		11. 행정사항(도)	36
1.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 교육			38
1.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 교육			
2. 법인택시 사고자 교육       40         3. 공무원 교통지식 함양교육       41         IV.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42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42         2.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42         3. 교통안전계도 및 홍보       43	$\coprod$ .	특별교육	40
2. 법인택시 사고자 교육       40         3. 공무원 교통지식 함양교육       41         IV.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42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42         2.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42         3. 교통안전계도 및 홍보       43		1.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 교육	40
IV.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40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42         2.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42         3. 교통안전계도 및 홍보       43		3. 공무원 교통지식 함양교육	41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42         2.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42         3. 교통안전계도 및 홍보       43			
2.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	IV.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42
2.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42
3. 교통안전계도 및 홍보 43			
			43

## I. 사업개요

### 사업목표

- ❖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운수인 양성
- ❖ 교통질서 및 법규준수 확립을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 조성
- ❖ 교통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 교육과정 및 인원

교육과정	횟 수	인 원	Ы	고
총 계	5,758회	156,084명		
사업용운전자	148	31,784		
어린이교통안전	5,500	105,000		
취약계층(노인,여성 청소년 등 )	100	18,000		
특별교통수단	4	400		
법인택시 사고자	1	150		
공무원 교통지식 함양	5	750		

### 교육과정별 목표

가. 운수종사자 : 직업윤리관 확립을 통한 선진교통문화 의식 함양.

교통사고 줄이기를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 조성

나. 어 린 이 :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통한 올바른 교통안전의식 고취

다. 취 약 계 층 :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교통안전의식 함양

으로 안전하고 활기찬 경남 이미지 제고

라. 특 별 교 통 :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행복한 경남 만들기 실현

# Ⅱ. 사업용운전자 법정교육

### 교육 비전 및 목표

- ❖ 경남도민이 행복한 사람중심의 교통문화 정립
- ❖ 안전하고 활기찬 교통도시 조성, 대중교통·교통물류의 혁신 선도

#### 교육개요 2

가. 교육과정 : 보수교육, 신규교육, 법령위반자교육

나. 교육인원 : 148회 31,784명

다. 교육내용 : 직무교육. 선진의식교육. 소양교육

라. 교육근거

O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58조

O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53조

O 2023년도 여객 및 화물 운수종사자 교육계획(경상남도 2022.11.30.)

마. 교육과정별 세부개요

과 정 별		교육인원	교육횟수	교육시간	교육 정규교육	국비 추가교육	타시도
	계 계	31,784명	148회	시간	원	원	
	여객 (대면)	9,713	49	4		10,000	10 000
보수 교육	화물 (대면)	19,691	81	4	무료	원	10,000원
	화물심화	800   7		8	6,000 (중식비)		16,000원
신규교육(대면)		1,100	10	16	25,000		
법령위반자교육 (대면)		480	4	8	6,000 (중식비)		16,000원

#### 교육운영 방법 3

#### 가. 대면교육 및 사전예약제로 진행

- O 보수교육과정
- 연수원: 대면교육(1기수당 250명이내 제한편성)
- 현지교육 : 대면교육(1기수당 권역별 교육장 상황에 따른 교육)
- O 신규교육과정
- 연 수 원 : 대면교육(1기수당 150명이내 제한편성)
- O 법령위반자교육
  - 연 수 원 : 대면교육
  - ※ 코로나 상황 악화 시 온라인교육 검토 후 진행여부 결정

#### 나. 여객·화물 보수교육 : 1일 4시간

- O 대상자 : 여객 및 화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용 운전자 ※ 면제자 및 세부사항 10P 참조
- O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운전자는 8시간으로 교육편성

### 다. 신규교육 : 2일 16시간(비합숙)

- O 대상자 : 새로이 채용한 여객업종 사업용 운전자
- 라. 법령위반자 교육 : 1일 8시간(분기별 1회 실시)
  - O 교육대상 : 운수종사자(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사고 또는 벌점으로 운전정밀검사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 ※ 법령위반자 근거법령 : 13P 참조

### 교육인원 및 일정

### 가. 조합·협회별 교육인원

조합·협호	교육인원	2023 교육계획	비고				
	합계	31,304명	*법령위반자 480명별도				
	소 계	10,813					
	버 스	2,865					
여	전 세 버 스	1,811					
객	고 속 버 스	90					
업	특 수 여 객	61					
종	마을,공항버스	134					
	택 시	2,724					
	개 인 택 시	3,128					
=1	소 계	20,491					
화 물	화 물	12,269					
업	개 별 화 물	3,536					
종	용 달 화 물	4,686					

- ※ 1. 여객업종 교육계획인원은 신규교육 대상자를 포함한 인원 임
  - 2. 조합·협회별 인원은 2022. 10. 31.기준 교육계획 인원 임 실 교육대상자는 2023년 여객 및 화물업종에 종사하는 전 사업용운전자 임 (단, 면제자 제외)

### 나. 교육운영방법 : 대면교육 및 사전예약제

구 분	계획인원	기 수	비고
대면교육	31,784명	148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운영방법 및 일정 조정될 수 있음

### 다. 휴일교육

구 분	계획인원	횟 수
화물업종(일반개별용달화물)	10,560명	48회
여객업종(전세버스)	660명	3회

### 라. 현지교육

	ı	-Jil	여 객 (	겈 종	화 물 (	업 종	비고
구 	분	계	계획인원	횟수	계획인원	횟수	
합 계		6,850명 (39회)	4,250명	25회	2,600명	14회	
서부권	진주	2,400 (13회)	1,000 (여객업종) 400 (개인택시)	5 (여객업종) 3 (개인택시)	1,000	5	
	사천	300 (3회)	200	2	100	1	
남부권	통영	900 (5회)	600	3	300	2	
	거제	800 (4회)	800	4	300	۷	
동부권	양산	1,800 (8회)	800	4	1,000	4	
동북부권	밀양	400 (3회)	300	2	100	1	
서북부권	거창	250 (3회)	150	2	100	1	

※ 코로나19 상황 및 현지교육 장소 사정에 따라 교육운영방법 및 횟수 변경 가능

## 과정 및 교육장별 일정표

### 가. 여객업종 보수교육

교육장	월	교육일자	비고				
	3월	7, 8, 9					
	4월	3, 4, 5, 6					
	5월	9, 10, 11, 12					
창 원	6월	13, 14, 15					
(경남교통문화연수원)	7월	22(전세버스업종)					
	8월	19, 20(전세버스업종)	- 사전 교육예약 신청 · <u>인터넷홈페이지,</u>				
	10월	25, 26, 27	<u>휴대폰 검색</u> "경남교통문화연수원"				
	11월	7, 8, 9, 10	- 교육시간 4시간				
진 주	2월	22, 23, 24(개인택시업종)	오전 : 9시 ~ 13시				
(진주시능력개발관 다목적홀)	7월	17, 18, 19, 20, 21	- 준비물 · 버스, 택시운전자격증				
밀 양 (밀양시청 대강당)	3월	14, 15	· 필기구				
양 산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4월	11, 12, 13, 14					
사 천 (사천시청 대강당)	5월	23, 24					
거 창	5월	31					
(거창문화원 상살미홀)	6월	1					
통 영 (통영마리나리조트 충무홀)	9월	20, 21, 22					
거 제 (거제청소년수련관 대강당)	10월	10, 11, 12, 13					

※ 본 일정은 코로나19 및 현지교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나. 화물업종 보수교육

교육장	월	교육일자	비고
	2월	18, 19	
	3월	4, 5, 18, 19	
	4월	8, 9, 22, 23	
	5월	13, 14	
	6월	10, 11 (위험물질 운전자)	
		17, 18, 26	
창 원 (경남교통문화연수원)	7월	8, 9	- 사전 교육예약 신청 · <u>인터넷홈페이지,</u>
	8월	28	<u>휴대폰 검색</u> "경남교통문화연수원"
	0.01	2, 3	00#00#070
	9월	16, 17 (위험물질 운전자)	- 보수교육 4시간 · 오전 : 9시 ~ 13시
	10월	16, 21, 22, 30	· 오후 : 14시 ~ 18시
	11월	13, 17, 18, 19, 22, 23, 24, 27, 28	- 위험물질 운전자 교육
	12월	4, 5, 6	(8시간) 09:00~18:00
밀 양 (밀양시청 대강당)	3월	16	- 준비물 · 화물운전자격증
양 산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3월	22, 23	· 필기구
사 천 (사천시청 대강당)	5월	25	
거 창 (거창문화원 상살미홀)	6월	2	
진 주	6월	27, 28, 29	
(진주시능력개발관 다목적홀)	8월	17, 18	
통 영 (통영마리나리조트 충무홀)	7월	3, 4	

※ 본 일정은 코로나19 및 현지교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다. 여객업종 신규교육 (2일 16시간)

교육장	ᅋ	일 자	비고
	1월	18 ~ 19	
	2월	27 ~ 28	- 사전 교육예약 신청
	3월	28 ~ 29	· <u>인터넷 홈페이지</u> 에 신청 "경남교통문화연수원"
	4월	18 ~ 19	- 교육시간 9시~18시
창 원	5월	16 ~ 17	(교육 첫째날 09:20까지 입교)
(경남교통문화연수원)	6월	20 ~ 21	- 준비물
	7월	12 ~ 13	·버스, 택시운전자격증 ·교육비 25,000원
	9월	6 ~ 7	
	10월	18 ~ 19	
	11월	11. 30 ~ 12. 1	

#### ※ 코로나19 상황 악화 시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 ※ 신규교육 대상자(여객업종)

-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전자로 새로이 채용된 자 (단. 여객업종 사업용 운전자로서 퇴직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제외)

#### ※ 신규교육 이수자는 당해년도 보수교육 면제 됨

#### ※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

- 주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 149

- 전화번호 : 055) 285-3982

#### ※ 2023 교육 일정표

(143일 158기)

○ 사업용운전자 교육(148기) - 신규교육 (10기) : - 여객업종 보수교육(계 49기) - 연 수 원(24기) : ① - 현지 교육(25기) : ① - 화물업종 보수교육(계 85기) - 연 수 원(67기) : ① - 현지 교육(14기) : ③ \* 법령위반자교육(4기) : ◆

○특별교육(10기) ・특별교통수단 (4기): ・공무원 교육 (5기): ·택시사고자 교육 (1기):



			1월							2월							3월			
일	월	화	수	목		토	일	월	화	수	목	급	토	일	월	화	수	목	급	토
										1	<u>2</u> 직무	3 교육	4				1	2	3	4 오전,오후
1	2	3	4	5	6	7	5	6	7	8	9	10	11	<u>5</u> 오전,오후	6	<u>7</u> 오전	<u>용</u>	<u>9</u> 오전	10 법령위반	11
8	9	10	11	12	13	14	12	13	14	15	16	<b>17</b> 명강	<b>18</b> 오전,오후	12	13	<b>12</b> 밀양	<b>⑮</b> 여객	16 型約量	17	<u>18</u> 오전,오후
15	16	17	18	19	20 캠페인	21	19 오전,오후	20	21	<b>22</b> 진주	<b>23</b> 개인	<b>24</b> 택시	25	19 <u>♀</u> 전,♀=	20	21	<b>22</b> 양산	<b>23</b> 화물	24	25
22	23	24	25	26	27	28	26	27	28		- 11 =	11-11		26	27	28	29	30 공무원	31 교육	
29	30	31																		
일	월	화	<u>4월</u> 수	목	己	토	일	월	화	<u>5월</u> 수	목	己	토	일	월	화	6월 수	목		토
_				'		1		1	2	- 3 공무원	4 교육	5	6					0	2	3
2	3 2 2 4	<b>4</b> <u>₹</u> ₹	<b>⑤</b>	<u>6</u>	7	8	7	8	9 오전	10 24	(11)	12 24	13	4	5	6	7	여객 <u>^</u> &	が記号 <b>9</b> はおりい	介を
		_		호천 <b>(13</b> )	_	오전,오후	18				오천		오전,오후	4		_	_	전시사쾓		위함물 17
<u>9</u> 오전,오후	10	<b>1</b>	<b>1</b> 2	여	객	15	<b>14</b> 오전,오후	15	16	17	18 공무원	19 교육	20	위험물	12	<u>오천</u>	<u>14</u> 오천	15 24 2	16	오전,오후
16	17	18	19	20 공무원	21	<b>22</b> 오전,오후	21	22	<b>23</b> 사천	<b>24</b> 여객	25 사천화물	26	27	<u>18</u> 오전,오후	19	20	21	22 공무원	23 교육	24
<b>23</b> 오전,오후	24	25	26	27 직원	28 연찬회	29	28	29	30	<b>31</b> 거창				25	26 <sup>오전</sup>	<b>27</b> 진주	28 화물	<b>29</b> 진주화물	30	
30			701							0.01							001			
일	월	화	<u>7월</u> 수	목	一日	토	일	월	화	8 <u>월</u> 수	목	己	토	일	월	화	9 <u>월</u> 수	목		Ę
_						1	_		1	2	3	4	5	_					1	<b>토</b> 2 와,오후
2	3 통영	4 화물	5	6	7	<b>8</b> 오전,오후	6	7	8	9	10	11	12	<u>3</u> 오전,오후	4	5	6	7	8 #399	9
<u>9</u> 오전,오후	10	11	12	13	<b>14</b> 명강	15	13	14	15	16	<b>17</b> 진주	18 화물	19	10	11	12	13 양산	14 화물	15	16
16	<b>①</b> 진주	<b>1</b> 8	19	<b>20</b> 여객	<b>2</b> 2 2 2 2 2 2 2 2 3	22	<b>20</b>	21	22 \{\}	23 <sup>j</sup> 교	24 통 수	25 단	26	•	18	19	8位 <b>20</b> 통영	2	22	위 2 3
23	24	여객 25	진주 26	27	28	29	27	28 <sup>오전</sup>	29	30	31			위함물 <b>24</b>	25	26	27 캠페인	여객 <b>28</b>	통영여객 <b>29</b>	30
30	31							오선									함페인			
			10월							11월							12월			
일	월	화	수	목		토	일	월	화	수	목	급	토	일	월	화	수	목	급	투
									_	1	2	3	4						1	2
1	2	3	4	5	6	7	5	6	(7) 오전	<u>용</u>	<u>9</u>	<u>10</u> 오전	11	3	4 오전,오후	5 오전,오후	6 오전,오후	tight.	8	9
8	9	<b>①</b> 거제	<b>①</b> 여객	<b>12</b> 거제	<b>13</b> 여객	14	12	13 오전	14	15	16	17 오전,오후	<b>18</b> 오전,오후	10	11	12	13	14	15	16
15	16 오전	17	18	19	20	<mark>21</mark> 오전,오후	19 오전,오후	20	21	<u>22</u> 오전,오후	<u>23</u> 오전,오후	<b>24</b> 오전,오후	25	17	18	19	20	21	22 명강	23
<b>22</b> 오전,오후	23	24	25 2.8	<u>26</u>	27 224	28	26	<b>27</b> 오전,오후	<b>28</b> 오전,오후	29	30			24	25	26	27	28	29	30
29	30 오전	31	±U	工世	TU			고만, 조주	10,17					31						

※코로나19 및 현지교육 장소사정 등에 따라 일정 변경가능

월 별					1월				25	월			
\\   일 별					18–19	18	18	19	19	22	23	24	27–28
	총 계	보수계	신규계	화물 심화계	목-금	토 (오전)	토 (오후)	일 (오전)	일 (오후)	수	목	급	월-화
√과정별					신규	화물 (대면)	화물 (대면)	화물 (대면)	화물 (대면)	진	주개인택	λΙ	신규
조합·기별 협회별					1	1	2	3	4	5	6	7	2
계	31,304	29,324	1,100	880	110	250	250	250	250	140	130	130	110
버 스	2,865	2,535	330		33								33
전세버스	1,811	1,711	100		10								10
고속버스	90	90											
특수여객	61	51	10		1								1
마을·공항	134	124	10		1								1
택 시	2,724	2,274	450		45								45
개인택시	3,128	2,928	200		20					140	130	130	20
기타(미취업)													
타시도(여객)													
화 물	12,269	11,389		880		130	130	130	130				
개별화물	3,536	3,536				55	55	55	55				
용 달	4,686	4,686				65	65	65	65				
타 시도													
기 타													
비고													

								3월								
4	4	5	5	7	8	9	14	15	16	18	18	19	19	22	23	28-29
토 (오전)	토 (오후)	일 (오전)	일 (오후)	화 (오전)	수 (오전)	목 (오전)	화	수	매	토 (오전)	토 (오후)	일 (오전)	일 (오후)	수	왜	화수
화물 (대면)	화물 (대면)	화물 (대면)	화물 (대면)	여객 (대면)	여객 (대면)	여객 (대면)	밀양	여객	밀양 화물	화물 (대면)	화물 (대면)	화물 (대면)	화물 (대면)	양산	화물	신규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3
250	250	250	250	220	220	220	150	150	100	250	250	250	250	250	250	110
				65	65	65	20	20								33
				20	20	20	20	20								10
				2	2	2	2	1								
				1	1	1										1
				2	2	2	1	1								1
				50	50	50	47	48								45
				80	80	80	60	60								20
130	130	130	130						60	130	130	130	130	130	130	
55	55	55	55						20	55	55	55	55	50	50	
65	65	65	65						20	65	65	65	65	70	70	

	4월 3 4 5 6 8 8 9 9 11 12 13 14 18-19 22 22 23 23															
3	4	5	6	8	8	9	9	11	12	13	14	18–19	22	22	23	23
월 (오전)	화 (오전)	수 (오전)	목 (오전)	토 (오전)	토 (오후)	일 (오전)	일 (오후)	화	수	막	По	화-수	토 (오전)	토 (오후)	일 (오전)	일 (오후)
여객 (대면)	여객 (대면)	여객 (대면)	여객 (대면)	화물 (대면)	화물 (대면)	화물 (대면)	화물 (대면)		양산	여객		신규	화물 (대면)	화물 (대면)	화물 (대면)	화물 (대면)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4	36	37	38	39
220	220	220	220	250	250	250	250	200	200	200	200	110	250	250	250	250
65	65	65	65					70	70	70	70	33				
20	20	20	20					20	20	20	20	10				
2	2	2	2					6	6	6	6					
1	1	1	1					1	1			1				
2	2	2	2					15	15	15	15	1				
50	50	50	50					48	48	49	49	45				
80	80	80	80					40	40	40	40	2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55	55	55	55						55	55	55	55
				65	65	65	65						65	65	65	65

						5월						
9	10	11	12	13	13	14	14	16–17	23	24	25	31
9	수 (오전)	목 (오전)	금 (오전)	토 (오전)	토 (오후)	일 (오전)	일 (오후)	화-수	화	수	목	수
여객 (대면)	여객 (대면)	여객 (대면)	여객 (대면)	화물 (대면)	화물 (대면)	화물 (대면)	화물 (대면)	신규	사천	여객	사천 화물	거창여객
40	41	42	43	44	45	46	47	5	48	49	50	51
220	220	220	220	250	250	250	250	110	100	100	100	80
65	65	65	65					33	10	10		20
20	20	20	20					10	20	20		10
2	2	2	2									1
1								1	1	1		2
2	2	2	2					1				
50	50	50	50					45	29	29		25
80	81	81	81					20	40	40		22
				130	130	130	130				60	
				55	55	55	55				20	
				65	65	65	65				20	

	1     2     10     11     13     14     15     17     17     18     18     20-21     26     27     28     29														
1	2	10	11	13	14	15	17	17	18	18	20-21	26	27	28	29
목	己	토	일	수 (오전)	목 (오전)	금 (오전)	토 (오전)	토 (오후)	일 (오전)	일 (오후)	화-수	월 (오전)	화	수	목
거창 여객	거창 화물	화물 심화	화물 심화	여객 (대면)	여객 (대면)	여객 (대면)	화물 (대면)	화물 (대면)	화물 (대면)	화물 (대면)	신규	화물 (대면)		진주화돌	2
52	53	1	2	54	55	56	57	58	59	60	6	61	62	63	64
70	100	220	220	220	220	220	250	250	250	250	110	220	200	200	200
20				68	68	68					33				
10				20	20	20					10				
				2	2	2									
											1				
				2	2	2					1				
20				45	45	45					45				
20				83	83	83					20				
	60	220	220				130	130	130	130		110	110	110	110
	20						55	55	55	55		40	50	50	50
	20						65	65	65	65		70	40	40	40

	7월 3 4 8 8 9 9 12-13 17 18 19 20 21														8월		
3	4	8	8	9	9	12-13	17	18	21	22	17	18	19	20	28		
화	수	토 (오전)	토 (오후)	일 (오전)	일 (오후)	수-목	월	화	수	목	己	토 (오전)	목	ПO	토 (오전)	일 (오전)	월 (오전)
통영	화물	화물 (대면)	화물 (대면)	화물 (대면)	화물 (대면)	신규		?	<u></u> 진주여2	H		전세 (대면)	진주	화물	전세 (대면)	전세 (대면)	화물 (대면)
65	66	67	68	69	70	7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150	150	250	250	250	250	110	200	200	200	200	200	220	200	200	220	220	250
						33	60	60	60	60	60						
						10	20	20	20	20	20	220			220	220	
							2	2	2	2	2						
						1	6	6	6	6	6						
						1	5	5									
						45	102	102	107	107	107						
						20	5	5	5	5	5						
80	80	130	130	130	130								110	110			140
35	35	55	55	55	55								50	50			40
35	35	65	65	65	65								40	40			70

					S	)월					
2	2	3	3	6–7	13	14	16	17	20	21	22
토 (오전)	토 (오후)	일 (오전)	일 (오후)	수-목	수	목	토	일	수	목	己
화물 (대면)	화물 (대면)	화물 (대면)	화물 (대면)	신규	양산	화물	화물 심화	화물 심화		통영여객	
82	83	84	85	8	86	87	3	4	88	89	90
250	250	250	250	110	250	250	220	220	200	200	200
				33					50	50	50
				10					40	40	40
				1					1	1	1
				1					1	1	1
				45					60	60	60
				20					48	48	48
130	130	130	130		120	120	220	220			
55	55	55	55		60	60					
65	65	65	65		70	70					

	10월 10 11 12 13 16 18-19 21 21 22 22 25 26 27 30													
10	11	12	13	16	18-19	21	21	22	22	25	26	27	30	
화	수	목	ПО	월 (오전)	수-목	토 (오전)	토 (오후)	일 (오전)	일 (오후)	수 (오전)	목 (오전)	금 (오전)	월 (오전)	
	거제	여객		화물 (대면)	신규	화물 (대면)	화물 (대면)	화물 (대면)	화물 (대면)	여객 (대면)	여객 (대면)	여객 (대면)	화물 (대면)	
91	92	93	94	95	9	96	97	98	99	100	101	102	103	
200	200	200	200	250	110	250	250	250	250	245	245	245	250	
50	50	50	50		33					85	85	84		
50	50	50	50		10					25	25	25		
1	1	1	1							3	2	3		
1	1	1	1		1									
1					1					2	3	3		
40	40	40	40		45					45	45	45		
57	58	58	58		20					85	85	85		
				140		155	155	155	155				150	
				40		40	40	40	40				30	
				70		55	55	55	55				70	

							11월							
11월	8	9	10	11	17	17	18	18	19	19	22	22	23	23
화 (오전)	수 (오전)	목 (오후)	금 (오전)	월 (오전)	금 (오전)	금 (오후)	토 (오전)	토 (오후)	일 (오전)	일 (오후)	수 (오전)	수 (오후)	목 (오전)	목 (오후)
여객 (대면)	여객 (대면)	여객 (대면)	여객 (대면)	화물 (대면)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247	247	247	247	263	263	263	250	250	250	250	264	264	264	264
83	82	82	85											
25	25	25	21											
3	3	3	3											
3	3	3	3											
49	49	49	50											
84	85	85	85											
				188	188	188	155	155	155	155	186	186	186	186
				25	25	25	40	40	40	40	25	25	25	25
				50	50	50	55	55	55	55	53	53	53	53

	11월								12	월		
24	24	27	27	28	28	30-1	4	4	5	5	6	6
금 (오전)	금 (오후)	월 (오전)	월 (오후)	화 (오전)	화 (오후)	목-금	월 (오전)	월 (오후)	화 (오전)	화 (오후)	수 (오전)	수 (오후)
화물 (대면)	화물 (대면)	화물 (대면)	화물 (대면)	화물 (대면)	화물 (대면)	신규	화물 (대면)	화물 (대면)	화물 (대면)	화물 (대면)	화물 (대면)	화물 (대면)
119	120	121	122	123	124	10	125	126	127	128	129	130
264	264	264	266	266	266	110	267	268	268	268	268	267
						33						
						10						
						1						
						1						
						45						
						20						
186	186	186	186	186	186		186	186	186	186	186	185
25	25	25	25	25	25		26	27	27	27	27	27
53	53	53	55	55	55		55	55	55	55	55	55

### 6

### 세부 교육계획

#### 가. 보수교육 과정

구 분		내용
	여객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교육근거	화물	<ul> <li>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li> <li>「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 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하고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li> </ul>
7000	여객	• 여객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업용운전자
_ 교육대상 _	화물	• 화물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업용운전자
계획인원	• 인원	: 30,204명(여객 9,713명, 화물 20,491명)

#### O 2023년도 보수교육 면제

- 면 제 자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여객 및 화물운전자
- 격년면제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여객운전자중 홀수년도(1.3.5.7.9) 출생자
  - \* 격년제 면제대상자는 여객운전자에만 해당(화물운전자는 미해당)
- 당해년도에 신규교육을 이수한 여객운전자
- 당해년도에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한 화물운전자
- 당해년도 11월 1일 이후 입사(취업)자 및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
- 화물운수종사자 중 법령위반자 교육을 당해년도에 이수한 자

#### ※ 무사고,무벌점 기준(법령)

- O 무사고·무벌점 :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함
- O 무사고·무벌점 자료 추출: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기준일: 전년도 10월말)
- O 특별사면으로 벌점이 감면되어도. 법규위반 사항이 있으면 교육 대상임 (' 16. 10. 11.자 도 교통정책과 - 20718호, 법제처 법령해석 내용 알림 참고)

#### O 중점교육내용

- 공익운전자로서 직업윤리관 함양 및 친절·서비스 실현
- 교통법규 준수 및 교통질서의 확립, 교통사고 줄이기
- 교통문화 선진화에 앞장서는 운수인
- O 교과목 편성

구 분	분 야	교 과 목	시간
	직 무	·개정 교통법규 및 안전운행 ·교통사고 사례분석 및 사고예방과 대책	2
여객 업종	선진의식 소 양	·직업윤리관 함양 및 친절·서비스 (성인지 교육 등) ·운전자의 건강관리(감염병 예방), 응급처치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운전자 역할과 자세	2
	행 정	·교육접수, 교통안전 홍보동영상, 설문조사 등	_
	직 무	·개정 교통관련 법규 및 안전운행 ·교통사고 사례 및 교통사고 줄이기	3
화물 업종	선진의식 소 양	· 안전한 화물운송과 고객만족 · 운전자의 건강관리(감염병예방) ·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한 운전자의 역할과 자세	1
	행 정	·교육접수, 교통안전 홍보동영상, 설문조사 등	_

### ○ 교육시간표(4시간), 단 위험물질운송차량 운전하는 종사자는 8시간

시 간	내용	비고
08:00~08:30	교육접수, 교통안전 동영상 상영	
08:30~09:00	교육안내, 입교식	
09:00~10:00	운전자의 건강관리(감염병예방), 응급처치	
10:00~11:00	직업 윤리관 함양 및 친절서비스, 성인지 교육	
11:00~12:50	교통사고 사례 분석 및 교통사고 줄이기 개정교통법규 및 안전운행	
12:50~13:00	교육수료(설문조사 및 수료증 교부)	

#### ※ 위험물질운송치량 운전하는 종사자는 8시간으로 교육일정 및 시간 별도 편성운영

### 나. 신규교육 과정

구 분		내 용
교육근거	여객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교육대상	여객	• 새로이 채용한 여객업종 사업용 운전자 (단, 신규교육 이수 후 여객업종 사업용자동차를 운전 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여객업종에 다시 채용한 사람은 제외한다)
계획인원	• 인원	: 1,100명

#### O 중점교육내용

- 도민 교통편의증진 친절·서비스, 운수행정 및 교통안전 대책
- 교통법규준수 및 교통질서의 확립, 교통사고 줄이기
- 직업윤리관을 갖춘 전문 운수인력 확보

#### O 교과목 편성

구 분	분 야	교 과 목	시 간
		·개정 교통법규 및 경제운전기법	2
		·교통사고 사례분석 및 안전운전	2
		·교통사고처리 요령 및 사고예방	2
	직 무	·자동차 보험 및 사고예방	2
		·안전운행을 위한 자동차 일상점검 및 응급조치	2
신 규		자동차 화재 및 소화기 사용법	
		·운전자의 친절·서비스, 성인지	1
교 육	선진의식	·직업 윤리관(운전자의 역할과 자세)	2
		·응급처치법	1
	소양	·운전자의 건강관리(감염병 예방)	1
	행 정	·교육접수, 교통안전 홍보동영상, 설문조사 등	1

### O 교육시간표(16시간, 2일 비합숙)

시 간	1 일 차	2 일 차
09:00~10:00	교육접수, 교육안내, 입교식	지역 교통취약지역,
10:00~11:00	개정 교통법규 및 안전운행	교통사고 사례 및 사고예방
11:00~12:00	경제운전기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12:00~13:00	중 식	중 식
13:00~14:00	운전자의 친절서비스, 성인지	교통사고 사례분석 및 교통사고
14:00~15:00	자동차의 일상점검 및 응급조치	줄이기
15:00~16:00	자동차 화재예방 및 경제운전기법	지어오기까(오래피어 여름히 피네)
17:00~17:00	지드된 브뤼 미 시그에비	직업윤리관(운전자의 역할과 자세)
17:00~18:00	자동차 보험 및 사고예방	교육수료(설문조사 및 수료증 교부)

### 다. 법령위반자교육 과정

O 여객운전자 법령위반자 교육과정

구 분		내용
교육근거	여객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교육대상	처분: 위반: • 여객! 운전? (여각	법 제26조제1항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을 받은 자(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13항을하여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사고나 벌점으로 2022년도 정밀검사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 중상이상 사고, 벌점 81점 이상) 교육과 별도로 운영, 위반시마다 해당교육 이수하여야 함

#### O 화물운전자 법령위반자 교육과정

구 분		내 용				
교육근거	히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 포폭근기	화물	제53조				
	• 화물	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교육대상	사람					
	• 제18	• 제18조의2항제3호에 따라 2022년도 특별검사 대상자				
	※ 교육	이수 시 보수교육 면제				

#### O 교육개요

- 교육인원 : 480명 정도 추계(시·군, 교통안전공단 별도선정)

- 교육횟수 : 년 4회(분기별 1회 실시)

- 교육시간 : 8시간

- 교 육 비 : 6,000원(중식비), 타시도차량 16,000원

#### ○ 중점교육내용

-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으로 교통사고 예방

- 운수사업법 준수, 친절·서비스 및 직업윤리관 함양 교육

#### O 교육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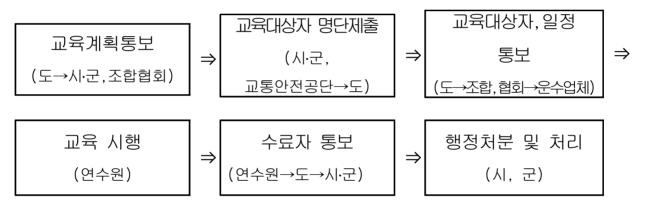
기 수	교육일자	교육 대상자	비고
2023-171	2023. 3. 10	2022. 4/4분기 법령위반 및 사고자	
2020 111	2020. 0. 10	2022년도 특별정밀검사 대상자	
2023-271	2023. 6. 9	2023. 1/4분기 법령위반 및 사고자	
2020-271	2023. 0. 9	2022년도 특별정밀검사 대상자	
2023-371	2023. 9. 8	2023. 2/4분기 법령위반 및 사고자	
2020-071	2023. 9. 0	2022년도 특별정밀검사 대상자	
2023-471	2023. 12. 7	2023. 3/4분기 법령위반 및 사고자	
2020-471	2020. 12. 7	2022년도 특별정밀검사 대상자	

※ 분기별 교육대상자는 반드시 지정된 교육일자에 교육 이수하여야 함

#### O 교육시간표(8시간)

시 간	내용	비고
08:00~09:00	교육접수, 교육생활안내, 입교식	
09:00~10:00	개정 교통관계법규 및 운수사업법	
10:00~11:00	운전자준수사항	
11:00~12:00	운전자의 친절서비스, 성인지 등	
12:00~13:00	중 식	
13:00~14:00	교통안전 예방과 대책	
14:00~15:00	운전자의 안전과 건강관리(감염병 예방)	
15:00~16:00	교통사고 원리기조 미 사그에바	
16:00~16:50	교통사고 처리기준 및 사고예방	
16:50~17:00	교육수료(설문조사 및 수료증 교부)	

#### ○ 교육추진절차



#### O 행정사항

- 교육대상자 명단 제출(시·군, 교통안전공단 → 도)
- · 교육일 전월 5일 까지
- 교육대상자 교육 일정 통보(도 → 조합,협회 → 해당 운수업체·사업자)
- 교육일 1개월전 까지
- 교육대상자는 교육당일 08:00 ~ 08:30 까지 입교등록 완료
- 법령위반자교육 대상자는 해당 교육일까지 타시도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법령위반자교육(강화교육 8시간)을 이수시 교육 인정
- 교육시행결과 통보 및 미이수자 행정처분(연수원→ 도 → 시·군)
- ·교육미이수자 행정처분 법적근거(39P ~ 40P) 참조(도, 시·군)
- ※ 여객 : 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1기수 유예 후 매기수마다 처분)
  - 화물 : 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내년도에 교육미이수자로 처분)

## 교재발간

구 분	교 재 명	제 작 개 요
여객운전자 교육용 (신규 · 여객 보수교육)	여객운전자 2023 교통문화	<ul> <li>○ 인성, 소양, 직무, 법규 등 기본 숙지 및 법정 교과목 수록</li> <li>○ 개정법규 및 최신 교통관련정보 제공</li> <li>○ 친절서비스 기법, 차량관리, 응급처치 등 직무수행의 기본 숙지사항 수록</li> <li>○ 교통사고 주요사례 등 사고예방 중점</li> <li>○ 응급처치법 및 안전생활, 건강관리, 도정시책 홍보 수록</li> </ul>
화물운전자 교육용 (화물보수교육)	화물운전자 2023 교통문화	<ul> <li>○ 인성, 소양, 직무, 법규 등 기본 숙지 및 법정 교과목 수록</li> <li>○ 개정법규 및 최신 교통관련정보 제공</li> <li>○ 차량관리, 응급처치 등 직무수행의 기본 숙지사항 수록</li> <li>○ 교통사고 주요사례 등 사고예방 중점</li> <li>○ 응급처치법 및 안전생활, 건강관리, 도정시책 홍보 수록</li> <li>○ 화물차의 특성 및 적재방법</li> </ul>
법령위반자 교육용 (심화교육)	심화교육 2023 교통안전길잡이	<ul> <li>○ 인성, 소양, 직무, 법규 등 기본 숙지 및 법정 교과목 수록</li> <li>○ 운수사업법, 친절서비스 직업윤리관</li> <li>○ 개정법규 및 최신 교통관련정보 제공</li> <li>○ 교통사고 주요사례 등 사고예방 중점</li> <li>○ 차량관리, 응급처치 등 직무수행의 기본 숙지사항 수록</li> </ul>

#### 교육 중점 추진사항 8

#### 가. 대면교육 재개를 통한 교육효과 증진

- O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교육, 건강관리(감염병 예방), 친절서비스(성인지 감수성)교육 중점 편성
- O 응급처치 체험 및 상황별 교통사고 위험상황 등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교육 병행 추진

#### 나. 교육 수요자 중심교육 강화

- O 화물업종 휴일교육(48회). 전세버스 휴일교육(3회)
- O 권역별 현지교육 실시(5개 권역 39회 6.850명)
- 코로나 상황 악화 시 현지교육장 ⇒ 연수원교육장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 진행
- O 여객업종 타시도 연수원 위. 수탁 교육 확대(인근 부산 제외)

### 다. 교통안전 정책 등 도정시책 홍보 확산

- O 도 교통정책 및 주요 국제행사 등
  - 하동세계차전통엑스포, 산청세계전통의학항노화엑스포, 미세먼지 대책 등 도정 주요시책 및 국제행사 홍보

#### 라. 교육참석 사전예약제 시행

- 전 과정 사전예약제 실시
- O 특정일자 집중 입교로 인한 혼잡 및 교육생 불편 해소
- O 제한된 현지교육장 등 규모에 적합한 교육인원 입교 ※ PC 및 핸드폰으로 예약 신청 가능

#### 교육관리 9

#### 가. 교육 대상자 선정 및 차출

- O 신규교육 : 승무전 교육 이수토록 조합(업체·지부)에서 차출
- O 보수교육 : 각 조합. 협회에서 지정 교육 일자별. 업체별 계획인원 책임 입교
- O 법령위반자교육
  - 대상자 선정 통보 : 시·군 및 교통안전공단 ⇒ 도. 연수원 ⇒ 조합. 협회
  - 각 조합. 협회에서 교육일정 교육대상자 소속업체. 사업자에 통지
- O 위·수탁교육
  - 타 지역 거주 사업용 운전자의 편의 제공. 시·도 간 교류(위·수탁 교육)
  - 해당 연수원의 교육일. 참석가능여부 등 사전 확인 후 교육 참석
  - 인근지역(부산)의 여객업종 위.수탁은 제외
- O 당해년도 교육면제자 안내
  - 법인회사, 개인택시 면제자 ⇒ 각 조합, 협회에서 법인회사(개인택시지부)로 통보
  - 화물개별사업자·개인개별화물·개인용달 면제자(비회원 포함) ⇒ 각 협회가 안내
  - 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당해년도 교육면제자 조회
- O 화물운수사업자 보수교육 일정 통지
  - 연수원이 화물 운수사업자에게 화물교육 일정 통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 ※ 시,군에서는 통지할 수 있는 정확한 화물운송사업자 현황(주소 등) 제출 ⇒ 도

#### 나. 교육입교등록

#### O 사전 인터넷 예약접수 필수(휴대폰, PC)

O 교육당일 교육 입교등록

구 분	보 수 교 육	신 규 교 육	법령위반자교육
입교등록	○교육당일	○교육시작일	○교육당일
	08:00~08:30까지 접수	09:00~09:30까지 접수	08:00~08:30까지 접수
	○운전자격증 또는 면허증	○운전자격증 또는 면허증	○운전자격증 또는 면허증
	※화물은 화물운전자격증	○교육비 25,000원	※화물은 화물운전자격증
준비물	○타시도 소속차량	○필기도구	○교육비 6,000원(중식비)
	교육비 10,000원		타시도차량 16,000원
	○필기도구		

### 다. 교육생 관리 및 교육수료

- O 교육안내 및 준수사항
  - 사전 교육예약자에 한해 교육장 입장허용
  - 강의시작 전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착석(인원 점검)
  - 대리입교, 음주, 도박, 무단결강, 잡담, 취침, 휴대폰 사용으로 교육 분위기 저해 행위자는 연수생 교육생활에 관한 규칙에 따라 퇴교 등 조치
- O 근태관리기준

	I
횟 수 항 목	1회
① 타인으로 하여금 수업을 받게 한 자	퇴교
② 원내에서 음주, 폭행, 도박한 자	퇴교
③ 신병으로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없는 자	퇴교
④ 타인의 소유물을 도취한 자	퇴교
⑤ 원내 무단이탈자	퇴교
⑥ 기물파손 및 주류 반입자	퇴교
⑦ 수업기간 및 외출, 외박 시 10분 이상 지각한 자 ————	주의
⑧ 교관의 지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폭언한 자	퇴교
⑨ 무단결강 한 자	
· 1시간 결강	경고
· 연속 2시간 결강	퇴교
⑩ 기타 교육생으로서 준수하여야할 기본 수칙 중	
교육태도불량, 복장불량 또는 고성 방가등 타인의	
교육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	경고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 시 온라인교육 근태관리 기준적용

#### O 교육수료

-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 수료증 교부 및 홈페이지 출력
- 조합·협회 교육실시 결과보고 및 교육 미이수자 독려

### 라. 현지 보수교육

#### O 대상지역

- 서부권(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합천)

- 남부권(통영, 거제, 고성) - 동부권(양산, 김해 일부)

- 동북부권(밀양, 창녕) - 서북부권(거창, 함양)

#### O 2023 현지교육 일정

권역별	업 종 일 수 일 정		비고		
계		39일			
	개인택시	3	2023.2.22	~ 2.24	진주 능력개발관
	여객업종	5	2023.7.17	~ 7.21	
서부권	(개인택시제외)	2	2023.5.23	~ 5.24	사천시청
	화물업종	5	2023.6.27 2023.8.17		진주 능력개발관
	71230	1	2023.5.25		사천시청
	여객업종	4	2023.10.10	) ~ 10.13	거제 청소년수련관
남부권	V 7 U O	3	2023.9.20	~ 9.22	통영 마리나리조트
	화물업종	2	2023.7.3 ~	7.4	00 1111111
	여객업종	4	2023.4.11	~ 4.14	
동부권	화물업종	4	2023.3.22 2023.9.13		양산 문화예술회관
두 브 ㅂ 긔	여객업종	2	2023.3.14	~ 3.15	미야시청 매가다
동북부권	화물업종	1	2023.3.16		밀양시청 대강당
서북부권	여객업종	2	2023.5.31	~ 6.1	거창 문화원
시하구선	화물업종	1	2023.6.2		기ㅇ 도치띠

※ 위 일정 및 장소는 코로나 19 및 현지교육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10 기타사항

#### 가. 교육업무 추진 일정

- O 2023 교육계획 수립 통보(도 ⇒ 시·군, 조합·협회) : 2022, 11월
- 2023 교육계획 인원 취합 및 확정(조합·협회 ⇒ 도) : 2022, 12월
- O 2023 교육계획안 이사회 심의, 도 승인 : 2022, 12월
- O 2023 세부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시행(연수원): 2023. 1월
- O 각 기수별 교육실시 결과 통보(연수원 ⇒ 조합·협회)
- 분기별 교육실시 결과 보고(연수원 ⇒ 도) : 매 분기말
- O 2023 교육실시 결과 보고(연수원 ⇒ 도) : 2024년 1월말
- O 교육결과 통보 및 미이수자 행정처분 등 시행(도 ⇒ 시·군) : 2024년

#### 나. 당해연도 교육면제자 안내

- 법인회사, 개인택시 면제자 ⇒ 각 조합, 협회에서 법인회사(개인택시지부)로 통보
- 화물1대개별사업자, 개별화물, 용달 면제자(비회원 포함) ⇒ 각 협회가 안내

### 다. 교육미이수자 및 실적 저조업체 행정처분 강화 계획

- O 실적에 따라 운행정지. 과징금 처분 강화 기준마련 및 시행 (도. 처분기준 시·군에 통보)
- O 대중교통 재정지원금 삭감 (도에서 시·군 재정지원금 지원시 교육실적 반영하여 감액 지원)
- O 행정처분 : 시외버스 도, 기타업종 시·군

### 라. 우수업체·운수종사자 표창 및 해외연수

- O 우수업체 및 운수종사자 표창 (우수업체(4개) 격려금 각50만원, 우수운전자(11명) 격려금 각20만원)
- O 우수 운수종사자 및 교육관계자 교통문화 해외 체험연수 (우수 운수종사자 및 교육관계자 18명, 교통문화 선진지 해외 체험연수)

#### 교육실적 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행정사항(도) 11

#### 가. 시·군

- O 시·군 홈페이지 등 「2023년도 운수종사자교육 계획」적극 홍보로 운수종사자 교육 참여 유도
- O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관리 철저 : 매월 입퇴사 현황 보고 조치
  - 모든 운전자 교통안전공단 전산등록 여부 점검(운전자 등록 철저)
- O 신규등록자는 운전자 취업신고 및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 이수토록 안내 조치
- O 법령위반자 교육대상자 명단 제출(시·군, 교통안전공단 → 도)
  - 교육일 전월 5일 까지(교육은 분기별로 실시)
  - 교육대상자(법령 참조)
  -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사고나 벌점으로 운전정밀검사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 O 법령위반자 교육 이수토록 조치하고. 교육 실시 후 미이수자 행정처분 (매 기수별)
- 화물교육일정 통지를 위한 화물사업자 주소 등 자료 제출(시·군 → 도) 시 · 군 관내 화물운송사업자 주소 등 자료 제출(2023. 1. 20한)
  - 2023. 1. 1. 현재 현황 자료, 우편번호(5자리), 주소 명확히 명기
  - 2023년 신규 운송사업허가자(양수자 등) 주소 등 자료 제출(2023. 10. 10한)
  - · 2023. 9. 30. 현재 현황 자료
  - · 2023년 10월중 신규허가자(양수자 등)는 시.군에서 교육일정 통지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3조에 의거 관할관청이 화물교육일정 통지하여야 함

- O 운수업체(사업자) 지도 및 점검 등 확인 시 보수교육 이수여부는 2023년 현재일 종사자를 기준으로 함
- O 교육 미이수자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확행

#### 나. 조합·협회

- O 과정별 정확한 교육대상자 파악, 업체별·과정별·일자별 교육 통보 및 입교 조치
- 교육 전과정 홈페이지 사전 예약제 안내(PC 및 휴대폰 예약 가능)
- O 보수교육 면제자 현황 확인(대상자 수정 또는 추가 보정)
- O 법령위반자 교육 대상자 교육일정 통지

#### 다. 교통문화연수원

- O 2023년도 세부 교육계획 수립, 시행
- O 원활한 운영을 하되.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사전 홍보
- O 교육이수자 수료 현황 관리 및 교육 홍보 철저
  - 연수원의 홈페이지에 교육수료현황을 수록하여 개별조회 및 검색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운수종사자 종합관리시스템에 운수종사자와 조합(협회)자료를 대조하여 대상자 관리 철저
  - 교육이수자를 운수종사자 종합관리 시스템에 입력. 미이수자 관리
- 교육이수사항 및 교육면제자 개별 확인서비스 제공에 철저
  - 교육대상자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교육 이수여부 및 면제자 검색 가능 토록 홈페이지 관리 및 보안 철저
  - 시·군청 및 운수단체 교육관계자에게 ID 및 PASSWORD 부여하여 교육수료자 명단 및 현황을 검색 가능토록 조치
- O 교육수료자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 조치
- O 연수생이 해당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교육과정별 수료증 교부. 기수별 또는 분기별 교육결과 및 이수자 명단을 도 및 운송사업 조합(협회)에 통보
- O 2017년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일정 통지 (일반우편 또는 등기우편)

### 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 법적근거

### 여객업종

#### 가. 사업일부정지(1차 5일, 2차 10일, 3차 15일)

- O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23호
- 시행령 제43조(별표3. 2-가-28)
  -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 사업일부정지 1차 5일, 2차 10일, 3차 15일
  -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가 없을 때에는 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수입이 가장 많은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 중 5대의 자동차 등)에 대한 사용정지

#### 나. 과징금처분

- O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 O 시행령 제46조(별표5. 1-20)
  -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 1차)버스 30만원. 택시30만원. 전세·특수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

### 다. 운전자격정지

- O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
-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별표5. 2-가-10), 2-나-13)-라))
  -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경우
  - 버스·택시운전자격정지 5일

### 화물업종

#### 가. 사업일부정지(10일)

- O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별표1 2.개별기준-차-18))
  -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교육을 받지 않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 사업일부정지 10일 (화물자동차의 1/5에 대한 사용정지)

#### 나. 과징금 처분

- O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별표2 2.개별기준-가-3)-너))
  -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교육을 받지 않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 과징금액 : 일반화물 30만원. 개별 15만원. 용달 15만원
  - ·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위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수종사자 수)
  - · 최대 300만원 이내 처분

#### 다. 과태료처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별표5 2.개별기준-보)
  - 운수종사자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과태료 50만원 부과

# Ⅲ. 특 별 교 육

###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 교육

구 분	내용	
근 거	• 도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교육기관 지정(조례)	
교육목적	•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안전운행, 교통약자의 이해	
701171	•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및 콜센타 상담원	
_ 교육대상 _	저상버스 운전원 : 기존 여객운전자 보수교육으로 실시	
교육시간	• 4시간(09:00 ~ 13:00)	
70110	• 교통약자의 이해 및 관련정책	
교육내용	•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운전 요령, 건강관리	
교육일자	• 2023년 8월 22일 ~ 8월 25일	
계획인원	• 4회 400명	

### 법인택시 사고자 교육

구 분	내 용
교육목적	• 대인사고를 유발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특별교육 과정을
	개설, 도민의 안전과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코자 함
   교육대상	• 대인사고(3주이상) 운전자, 대인대물 복합사고 운전자
<u>ш</u> 4 4 6	• 대물사고(손해액 5백만원이상) 운전자
교육시간	• 3시간(10:00 ~ 13:00)
교육비	• 13,000원(중식비 포함, 택시공제조합 부담)
교육내용	• 사례별 교통사고 분석을 통한 맞춤형 교육
교육일자	• 2023년 6월 8일
계획인원	• 1회 150명

## 공무원 교통지식 함양교육

구 분	내용
교육목적	• 교통문화 선진화 조기 정착을 위한 선도 역할 담당 • 교통관련 지식의 심도있는 습득, 교통분야 지도자 양성
추진방향	<ul> <li>단기간 내 분야별 전문지식 학습 기회 제공</li> <li>실생활에 접목 가능한 실무 위주 중점 교육</li> <li>상호기관 부담 최소화 및 효율적 교육체계 확립</li> <li>습득 지식에 대한 도민 파급 방안 모색</li> </ul>
추진체계	<ul> <li>교육총괄: 도 교통정책과</li> <li>교육계획 시행 및 교육생 선발 홍보</li> <li>교육운영: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li> <li>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과정 관리</li> <li>교육수료생 관리 및 사후 정산 등</li> </ul>
교육대상	• 도내 공무원
교육시간	• 14시간(2일 비합숙) * 공무원 상시학습 14시간 인정
교육비	• 60,000원(중식비 포함)
중점운영사항	<ul> <li>외부 유명강사 초빙, 이론과 현장실무중심 교육 시행</li> <li>PPT 및 동영상 활용한 생동감 있는 교육</li> <li>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방역지침 준수하여 교육운영</li> </ul>
교육내용	• 교통법규, 교통사고 처리요령, 보험상식, 차량관리 등 •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한 역할과 자세
교육일자	• 3월 30일~31일, 4월 20일~21일, 5월 3일~5월 4일, 5월 18일~19일, 6월 22일~23일
계획인원	• 5회 750명

# Ⅳ.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구 분	내 용
교육목적	• 어린이 교통안전의식 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
교육대상	• 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
교육시간	• 1시간
교육비	• 무상교육
교육내용	• 신호등 모형, 동영상, 실습체험 교육을 통한 교통안전교 육
교육일자	• 연중 실시, 권역별 어린이교통안전교육강사 12명 활용
계획인원	• 5,500회, 105,000명

###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구 분	내용
교육목적	• 노인, 청소년, 여성 등 교통 취약계층 교통사고 예방
교육대상	• 노인, 여성, 청소년, 수능후 고3학생, 지도교사 등
교육시간	• 1시간 ~ 2시간
교육비	• 무상교육
교육내용	• 교통사고 현장의 동영상 자료 등 대상자 맞춤식 교육실시
교육일자	• 연중 실시, 연수원 직원, 외부강사 활용
계획인원	• 100회, 18,000명

2



## 교통안전 계도 및 홍보활동

구 분	내용	
- ·	• 도민의 교통안전 의식 고취 및 교통사고 예방	
목 적	• 교통문화 선진화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	
	• 교통질서 계도 캠페인 10회	
홍보계획	• 교통안전 전시회 10회	
	• 어린이교통안전포스터 공모전 1회	
홍보대상	• 경남도민	
	• 캠페인: 터미널, 혹서기, 다중집합장소 등 3회	
	출근길, 등하교길 캠페인 등 7회	
세부내역	• 포스터 및 판넬전시 : 다중이용시설, 현지교육장, 병원,	
	학교, 운수업체 등 10회	
	• 포스터 공모전 : 도내 초등학생 대상 1회 실시	
	(10월 중)	

## 4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 캠페인

구 15	룯	내용
목	덕	• 버스이용 승객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친절버스기사 추천을 통해 우수한 친절버스 기사를 격려하고 경남형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립
홍보대성	상	• 경남도민
		• 진행일정 : 상, 하반기 2회실시(2023년 3월, 7월)
┃ ┃ 세부내의	격	● 참여업체 : 경남도내 시내, 시외, 농어촌버스 1300여대
	•	• 친절기사 선정 : 최우수기사 10명, 우수기사 20명
		(상, 하반기 구분하여 선정 후 시상)

### 별첨 "2023 교육일정표 및 월별 세부내역" 참조